

진료비 재청구 요령 및 심사사례

이길진 이비인후과의원

이길진

의료보험수가의 인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진료의 삭감이나 지급불능시 이를 귀찮아서 또는 어떻게 재청구를 하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회원들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하며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의사들의 부담청구액 운운하는데도 그 이익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작은 액수라도 꼭 재청구 및 이의 신청을 하여 진료비 심사상에 우리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형태의 진료비 재청구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진료비 재심사 의뢰서(진료시 심사상 삭감시)

“진료비 재심사 의뢰서”(요양급여기준 p. 50)에 통보서상에 기록된 접수번호, 목음번호, 통보번호, 요양기관도착일자,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이의 신청내용을 기록한다.

2. 진료비 심사결과 통지서상 지급불능시(조합기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착오시)

정정된 명세서를 다음달 청구시 뒷부분에 첨부하며 내역서란 빈칸에 심사결과 통지서상에 기재된 접수번호, 목음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지급불능사유를 기록하여 재청구한다.

3. 진료비 지급 통보서상 지급불능시

1) 조합기호, 증번호 착오시(직장의료)는 “정산진료비 재청구 의뢰서”에 정산통보번호, 수진자성명, 명세서 일련번호, 정산일련번호, 환수사유, 증번호, 조합기호를 기록하고 재청구 의뢰내용을 기재한다.

2) 공단은 “진료비재청구서”(주민등록번호 상이자분)에 반송번호, 수진자성명과 정정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여 청구한다.

* 재청구 용지는 연합회 심사과나공단지부에 우편으로 부탁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양을 복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사사례

1. 인후두소작술(자-226)

급성편도염, 치근염, 급성인두염 등에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국소마취후 AgNO₃로 소작할 경우 인정. 주2회 치료기간중 2회 인정(의보련 90. 12).

2. 비중격교정술(자-100)

2가지 이상 수술시 비중격교정술은 별도로 100% 산정했으나 91. 1. 1부터 주된 수술일 경우만 100% 산정할 수 있다(의보련 01. 1).

3. Impedance Audiometry(나-689-다)

1주 이상 간격시 2회 검사 인정(의보련 90. 6).

4. 초진료 산정

기간의 기산점 산정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 기간의 초일은 산정하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이에 의거 요양급여기준책자 진찰료항(9)에 따라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한 경우 재진료로 산정한다(의보련 90. 11).

예 : 4월 15일과 5월 15일은 재진.